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II 특별약관

제1조(특별약관의 적용대상 및 적용기간)

①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.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 보장이 부가된 보험계약 (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-13조(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) 별표14 및 별표15에서 정한 실손의료비 보장 (이하 「실손의료 보험담보」라 합니다)
   단, 보험업감독규정 제7-49조(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)에서 정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함
2.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갱신이 도래하는 갱신형 실손의료 보험담보 중 갱신주기가 1년인 담보를 말하며, 갱신도래상품의 대상상품 및 대상담보는 이 특별약관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따릅니다.

② 이 특별약관의 적용기간은 「실손의료 보험담보」의 보험기간 및 갱신기간 동안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II(이하, 「안정화 할인II」이라 함)을 적용하며, 차회 이후 갱신시에는 안정화 할인II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

제2조(보험료 할인대상 및 보험료 할인)

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적용기간 동안 매회 납입되는 실손의료 보험담보의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적용되며, 할인율은 이 특별약관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따릅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할인 외에 추가로 적용되고 있는 할인금액과 안정화 할인II의 할인금액의 합계액이 적용대상의 실손의료 보험담보의 「사업비」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한도로 보험료를 할인합니다.

③ 제2항에서의 「사업비」란 적용대상의 "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"에서 정한 실손의료 보험담보의 예정사업비(신계약비, 유지비, 수금비) 또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(유지관리비용, 기타비용)을 뜻합니다.

제3조(준용규정)

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.